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28
----------	------

제출일자 : 2025. 10. 2.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기존 조례의 위탁 운영 관련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위탁 조건, 기간, 평가 기준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적 정비 필요.
- 나. 사용료 반환 기준을 법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추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권리 보호 및 행정 신뢰성 제고.
- 다. 시설 사용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허가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분쟁 예방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

2. 주요내용

- 가. 문화회관 사무위탁에 대한 위탁기간, 조건, 재계약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민간위탁 관련 조례 및 위탁 협약 준용 명시함(안 제5조)
- 나. 사용료 환불 체계를 구체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함(안 제8조)
- 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
- 라. 시설의 “허가취소 등” 조항을 신설하여 허가 취소 요건, 반환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5. 9. 1. ~ 9. 21.)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리·운영 및 사무위탁) ① 회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관리·운영실적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동의를 받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회관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앓는 경우
2. 회관시설·장비비품 등을 고의로 파손·훼손하거나 회관을 이용하는 타인의 신체 등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가한 경우
3. 그 밖에 회관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군수는 회관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하고, 그 수허가자인 회관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이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회관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회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반환(별표 2에 따른 위약금 미부가 및 미공제)
2. 회관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별표 2에 따라 반환
3.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별표 2에 따라 반환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그 반환 사유 발생일부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되 그 최종근무일이 휴무일이어서 반환하지 못한 경우 그 휴무일이 지난 최초의 근무일에 반환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시, 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군수는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취소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관 관리·운영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달성문화회관 사용료 반환 규정		
반 환 사 유	반 환 기 준	비 고
<p>■ 회관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의 취소, 정지</p> <p>- 사용개시일 이전</p> <p>- 사용개시일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허가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사용허가내용이 사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p>○ 반환금액 환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 <p>○ 반환금액 환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환 금 액 = [사 용 료 - (사 용 료 ×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사용허가기간(일수)}}$)] + 위약금 · 반 환 금 액 = [사 용 료 - (사 용 료 × $\frac{\text{이미 이용한횟수}}{\text{사용허가횟수}}$)] + 위약금 	<p>* 사용개시일이란 사용허가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사용허가내용이 사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p> <p>* 사용료란 일반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고 회관에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부대시설 사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사용료에 포함되지 않음</p>
<p>■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의 취소, 정지</p> <p>- 사용개시일 이전</p> <p>- 사용개시일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허가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사용허가내용이 사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p>○ 반환금액 환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금액=사용료-위약금 <p>○ 반환금액 환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환 금 액 = [사 용 료 - (사 용 료 ×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사용허가기간(일수)}}$)] - 위약금 · 반 환 금 액 = [사 용 료 - (사 용 료 × $\frac{\text{이미 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p>* 위약금은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운영의 위탁)</p> <p>① 군수는 회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관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수탁받은 법인이나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관리·운영 및 사무위탁)</p> <p>① 회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p> <p>②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관리·운영실적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 동의를 받고</p>

현행	개정안
	<p>재계약 할 수 있다.</p> <p>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⑥ 회관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p> <p>1. 감염병질환자</p> <p>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그 밖에 군수가 회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앓는 경우</p> <p>2. 회관시설·장비비품 등을 고의로 파손·훼손하거나 회관을 이용하는 타인의 신체 등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가한 경우</p> <p>3. 그 밖에 회관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p> <p>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경우 수탁반은 법인이나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은 회관의 시설 사용자로 하여금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p> <p>②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및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p> <p>① 군수는 회관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하고, 그 수허가자인 회관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이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회관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p> <p>① 회관의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p> <p>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p>	<p>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p> <p>① 제7조에 따라 회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p> <p>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p>

현 행	개 정 안
<p><u>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u></p> <p><u>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전액 반환</u></p> <p><u>3.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일당 10퍼센트씩 90퍼센트까지 반환</u></p> <p><u>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u></p>	<p><u>(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반환(별표 2에 따른 위약금 미부가 및 미공제)</u></p> <p><u>2. 회관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별표 2에 따라 반환</u></p> <p><u>3.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별표 2에 따라 반환</u></p> <p><u>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그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되 그 최종근무일이 휴무일이어서 반환하지 못한 경우 그 휴무일이 지난 최초의 근무일에 반환한다.</u></p>
<p><u><신 설></u></p>	<p><u>제9조(사용료의 감면)</u></p> <p><u>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p><u>1. 국가, 시, 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u></p> <p><u>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u></p> <p><u>② 군수는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u></p> <p><u>제10조(허가취소 등)</u></p> <p><u>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u></p> <p><u>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u></p> <p><u>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u></p> <p><u>4.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u></p> <p><u>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취소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u></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준용규정) 군수는 회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p><u>회관 관리·운영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u></p> <p>제11조(준용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p>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시책과 장려)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고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의 대상과 범위)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행사·활동·사업(이하 본 조에서 “사업 등”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수행하는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운영과 사업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간 문화예술교류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연 등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사무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